

에스엠인증원



인증, 심사 서비스 및 인증마크 사용권에
대한 약관 및 조건

인증신청서와 함께 읽으세요

연락처는 뒷면을 참조하세요

인증서비스 약관 및 조건

1. 적용성

- 1.1 본 약관 및 조건은 **에스엠인증원**(이하 “**SMR**”)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에 적용한다.
- 1.2 본 약관 및 조건은 주문, 편지나 기타 문서, 협상이나 기타 방법 어느 쪽이든, **고객**이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해 올 수 있는 조건들에 우선한다. 본 약관 및 조건이 **SMR**의 인증절차서 또는 다른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면, 해당 불일치의 범위에서는 본 약관 및 조건이 우선한다.
- 1.3 **SMR**을 대신해 구두로 본 약관을 포기 또는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고 행동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. 포기 및 변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**SMR**의 대표가 서명한 문서로만 효력을 가진다.
- 1.4 인정기관의 지시를 **SMR**이 충족하는데 필요한 변경을 포함하여, **SMR**은 본 약관 및 조건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**고객**에게 통지하거나 **SMR**웹사이트에 게시한다
- 1.5 본 약관 및 조건은 **고객**이 최초/갱신/인증전환 신청서에 서명한날부터 후속하는 모든 사후관리심사를 포함해 효력을 발휘하고 어느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. 본 약관 및 조건의 한글 본과 영문 본이 명확히 불일치하거나 상충할 경우, 한글 본이 우선한다

2. 정의

본 약관 및 조건에서;

- ‘인증서’ 인증등록을 위해 **SMR**이 발행한 문서를 의미한다
- ‘인증’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인증절차에 따라서 경영시스템이 심사된 것을 입증하는 의미이다
- ‘인증마크’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적격한 인원에 의해 경영시스템이 인증된 것을 표시하는 상징, 단어 또는 기타 기호를 의미한다
- ‘인증절차’ **SMR**이 개발해 인증승인 또는 유지의 목적으로 경영시스템 심사에서 활용하는 절차를 의미한다
- ‘인증서비스’ 인증절차에 따른 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의미한다
- ‘고객’ 인증을 얻으려는 조직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
- ‘계약’ 인증 및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**고객**의 신청으로 발생한 **SMR**과 **고객**간의 계약으로 본 약관 및 조건을 포함한다.
- ‘사업장’은 제품의 제조 또는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실행의 장소를 의미한다
- ‘**SMR**’은 **에스엠인증원(주)** (사업자등록번호 107-81-97144)를 의미한다
- ‘대리인 또는 위탁계약자’ **SMR**을 위해 인증절차와 관련해서 배당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기간 동안 **SMR**과 계약한 인증기관 파트너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

3. 인증서비스

- 3.1 본 계약 하에, **SMR**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**고객**은 요청한 인증서비스를 받기로 동의한다
- 3.2 **SMR**은 인증절차의 전체 또는 일부의 수행을 포함한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리인 또는 위탁계약자를 선임할 수 있고 **고객**은 이러한 선임에 동의한다

4. 인증심사비용

- 4.1 인증심사비용(이하 “인증심사비”)은 신청비, 심사비 및 출장비를 포함한다.
- 4.2 **고객**은 **SMR**이 제공한 인증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모든 인증심사비를 **SMR**에 적시에 지급해야 한다.
- 4.3 4.2항 하에, 지불해야 할 인증심사비는 **SMR**의 인증심사비 표에 제시된 것이나 또는 **SMR**과 **고객**간에 별도로 합의한 것(견적)으로 한다.
- 4.4 본 계약 하에, **SMR**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지급해야 할 인증심사비를 받기 위해 청구서를 발행하고 **고객**은 **SMR** 청구서의 지급기한내에 지정된 통화로 청구된 금액을 **SMR**에게 지불해야 한다.
- 4.5 **고객**이 **SMR**청구서의 지불기한내에 **SMR**에게 지불해야 할 인증심사비를 지불하지 못하면, **SMR**은 인증심사 절차를 중단하거나, 인증심사결과 무효화 또는 **고객**에게 통지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
5. 평가

접근 및 협력

- 5.1 **고객**은 **SMR**의 인증절차를 준수하고 **고객**이 요구한 인증서비스를 **SMR**이 제공하는데 필요한 해당 인증 절차에서 요구하는 **고객**의 건물, 시설, 문서 및 기록에 대한 접근, **고객**의 하도급업자 및 대리인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포함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**SMR** 직원, 대리인 및 위탁계약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한다.

5.2 **고객**은 현장에서 **SMR**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를 입회하려는 인정기관 대표의 허용을 포함해, **고객**이 요구한 적절한 인증심사활동을 위해 **고객**의 경영시스템에 관련되는 **SMR**의 요구사항을 즉시 준수해야 한다.

안전

5.3 **고객**은 해당하는 경우 모든 관계되는 안전 또는 보호의류 및/또는 장비의 제공 및 **SMR**, **SMR**의 직원, 대리인 또는 위탁계약자에게 안전 위험 또는 특별훈련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통보를 포함해, 해당 인증절차가 요구하는 활동에서 **SMR**의 직원, 대리인 또는 위탁계약자에 대한 안전에 책임이 있다.

SMR에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

5.4 **고객**은 **SMR**에게 이용토록 한 모든 정보가, **고객**이 알고 믿는, 완전하고 정확한 것임을 보증해야 한다

6. 인증

6.1 만약

- (a)**고객**이 본 약관 및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
- (b)해당 인증절차에 따라 **고객**의 경영시스템을 평가한 후, **SMR**이 인증이 적합하다고 만족하면

SMR은

- (a)인증을 승인하고
- (b)**고객**에게 인증서를 발행하며
- (c)해당 인증마크 사용권을 **고객**에게 제공한다.

6.2 만약 인증이 적합하지 않으면, **SMR**은 이것을 **고객**에게 통보한다.

7. 인증 후

인증기한

7.1 본 약관 및 조건 하에, 인증은 인증서에 기록된 만료일까지 지속된다.

인증의 유지

7.2 **고객**은 인증 받은 대로 경영시스템을 유지해야 하고 인증서에 열거되거나 참조된 요구사항을 포함해 **SMR**이 인증이 적절하게 유지된다는 보장을 하는데 필요한 인증심사비의 지급을 포함한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7.3 **고객**은 **고객**의 인증 받은 경영시스템에 대해 지정된 주기에 따라 **SMR**의 사후관리심사를 허용해야 한다

변경

7.4 **고객**은 인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증된 경영시스템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변경은 **SMR**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.

- (a)법적, 상업적,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.
- (b)조직 및 경영진(예, 핵심 경영진, 의사결정자 또는 기술직 직원)
- (c)연락 주소 및 사업장.
- (d)인증된 경영시스템의 운영 범위
- (e)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대한 중대한 변경

인증서의 활용

7.5 **고객**은 **SMR**의 허가 없이 인증서를 변경, 수정, 손상 또는 파손해서는 아니 된다.

7.6 본 약관 및 조건 하에, **고객**은 인증이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홍보할 수 있고 인증의 증거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. 사본이 사본으로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다면 **고객**은 제공된 인증서를 복사할 수 있다.

7.7 인증서의 원본은 **SMR**의 재산으로 **SMR**이 요구하면 즉시 **SMR**로 반환되어야 한다.

7.8 인증서는 인증이 인정기관 또는 정부부처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.

인증에 대한 허위진술 금지

7.9 **고객**은 반드시

- (a)인증에 대해 오해, 기만 또는 혼동케 하는 어떤 행위에도 관련되어서는 아니 되며; 또한

(b)다른 방법으로 **고객**의 인증의 특성, 상태, 범위 또는 효과를 부정확하게 말해서는 아니 된다.

7.10 **7.9**항을 위반하는 행위나 허위진술을 정정하라는 **SMR**의 지시를 **고객**은 즉시 준수해야 한다

인증정지, 취소 또는 인증만기, 인증복구

7.11 **고객**의 인증은 다음 상황에서 즉시 정지된다:

- (a)**SMR**이 **고객**에게 **고객**의 인증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통지한 경우
- (b)**고객**이 본 약관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
- (c)**고객**이 지정된 주기에 사후관리심사를 거부한 경우
- (d)**고객**이 **SMR**에게 변경사항 검토 요청 통지를 하지 않은 채, **고객**의 경영시스템에서 상당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
- (e)인증 대상인 경영시스템에서, **고객**이 **SMR**에게 검토 요청 통지를 하지 않은 채, **고객**의 경영시스템의 설계 또는 제조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

7.12 **고객**의 인증이 정지되면;

- (a)**SMR**은 **고객**에게 인증정지에 대하여, **고객**이 통지 30일안에 인증정지를 해소되는데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**고객**에게 제공한다.
- (b)**고객**은 인증정지가 해소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
- (c)**고객**은 대중이 오해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**SMR**이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

7.13 **SMR**이 **고객**이 취한 조치에 만족하면, **SMR**은 **고객**에게 통지로 정지를 해소할 수 있다

7.14 **SMR**은 인증정지가 9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, **고객**에게 통지로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.

7.15 **고객**의 인증이 만료되거나 또는 취소되면 **12**항 하에 계약은 해지되며 **고객**은 즉시

- (a)지불하지 않은 인증심사비의 모든 금액을 **SMR**에게 지불해야 한다
- (b)**고객**의 인증과 관련해 사용이 허가된 인증마크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(만약 있다면);
- (c)**SMR**의 요구에 따라, 인증서 원본을 대중 전시에서 철수하고 인증서의 원본은 **SMR**에 반환해야 한다.
- (d)인증사실에 대한 모든 광고, 판촉 또는 기타 출판을 중지해야 한다.
- (e)인증만료 또는 취소에 대해 직원, 소비자 및/또는 공급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**SMR**이 요구하는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
- (f)인증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고 제3자가 믿는 오해가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

7.16 인증복구절차

1. 인증유효기간 만료 이후 6개월이내에는 인증을 복구할 수 있다. 인증복구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.
 - (a)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일 것
 - (b) 인증갱신 지연에 대한 사유 또는 문제점이 모두 해결될 것
 - (c) 갱신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최소한 2단계 심사가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완료될 것
2.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후는 갱신인증으로 진행할 수 없다. 이 경우에는 최초인증절차에 따라야 한다.

8. 기밀성

8.1 **SMR**은 **SMR**의 직원, 대리인 및 위탁계약자가 계약기간 동안 알게 된 **고객**의 소유나 기밀정보를 기밀로 취급하고, **SMR**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**고객**의 신원 및 인증의 특성, 상태, 범위 또는 효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**고객**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떤 제3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.

8.2 타인 및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**SMR**이 판단하는 경우, **SMR**이 제공한 서비스의 결과로 얻은 정보를 관련 규제기관에게 공개하는 것은 **8.1**항으로 **SMR**을 제한하지 않는다.

8.3 본 약관 및 조건 하에, 기밀준수 의무를 다음 정보까지 확대하지는 않는다:

- (a)수신자에게 정당하게 알려졌거나 수신자의 소유나 관리하에 있고 수신자가 소유한 기밀준수 의무의 대상이 아닌 정보
- (b)대중적 지식(본 약관 및 조건 위반 결과와는 다른)
- (c)인정기관이 공개하도록 한 정보
- (d)법률이 공개하도록 한 정보

9. 지적재산권

고객은

- (a)SMR이 인증절차 및 연관된 문서에서 저작권, know-how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임을 인정한다
- (b)인증절차나 본 계약 하에 **고객**에게 전달된 문서에 권리,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인정한다

10. 책임의 제한

10.1 SMR은 본 약관 및 조건으로부터 조항, 조건 또는 보증의 제외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조항의 일부를 무효화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항, 조건 및 묵시적 또는 법령으로 주어진 보증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), 일반법률 또는 관습을 제외한다.

10.2 법이 최대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본 약관 및 조건 또는 배제할 수 없는 법률조항, 조건 또는 보증(소유권의 양목적 보증 외에 다른)의 명시적 조항의 위반에 대해, **고객**에 대한 SMR의 책임은 다음의 선택으로 제한된다:

- (a)인증서비스를 다시 제공한다; 또는
- (b)인증서비스를 다시 받는 비용을 지불한다

10.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해당 법률이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, SMR은 제3자가 제기한 클레임의 결과로 초래되거나 입은 이익의 손실과 피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고, **고객**이 입은 손실 및 피해(직접, 간접, 사고, 특별 및/또는 파생적 피해 또는 이익의 손실이 무엇이든지)가 SMR이 제공한 서비스나 인증의 대상이 되는 **고객**의 경영시스템 또는, 과실행위나 SMR의 누락, 임원, 직원, 대리인 또는 위탁계약자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11. 배상

고객은 SMR이 직·간접으로, 아래의 결과로 입을 수 있는 모든 지출, 손실, 피해 또는 비용(변호사 및 자신의 **고객**에게 부담하는 비용 및 SMR이 야기했든지 SMR을 상대로 주어진 것이든지)에서 SMR을 보호해야 한다:

- (a)SMR이 본 약관과 조건을 해지기 위해 명시적 권리를 실행하는 것에 관한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고, **고객**이 본 약관 및 조건을 위반, 또는
- (b)재산상의 손실이나 피해 또는 인명의 상해나 사망;
 - (i)과실행위나 누락 또는 **고객**이나 그 임원 및 직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
 - (ii)인증의 대상인 **고객**의 경영시스템에 관련되거나 야기되는 결과

12. 계약해지

12.1 **고객**은 30일전에 SMR에 통지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

12.2 SMR은 아래의 경우 **고객**에게 통지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:

- (a)**고객**이 본 약관 및 조건을 위반(7.10항 하에 인증정지를 허가하는 방식 이외)하고 위반해소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해소에 실패한 경우
- (b)**고객**이 그 위반이 해소할 수 없는 본 약관 및 조건에 대한 자료제공을 위반한 경우
- (c) 12.3항이나 관련되는 일들이 **고객**에게 발생한 경우

12.3 **고객**은 아래의 경우 SMR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:

- (a)직·간접 수익적 소유권 또는 **고객**에 대한 관리의 변경이 있는 경우
- (b)사업의 일반적 과정과는 달리 **고객**의 자산, 운영 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처분하는 경우
- (c)사업을 중단할 경우
- (d)지급기한이 된 채무의 지불을 중단한 경우
- (e)**고객**의 자산,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소유 또는 처분을 위해 저당권자가 어떤 조치를 취한 경우
- (f)**고객** 및 채권자간에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

- (g)파산관재인 또는 **고객**의 자산 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관리인 같은 사람을 선임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
- (h)**고객**이 파트너십인 일 때, 파트너십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취해지거나 또는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

13. 계약해지 후

13.1 본 계약 해지에 관해, **고객**은 **7.14**항 하에 **고객**의 모든 의무를 즉시 준수해야 한다

13.2 **8,9,10,11** 및 **13**항은 계약해지 후에도 유효하다.

13.3 **12**항(해지) 또는 **20**항(불가항력)하에 계약해지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발생된 권리 또는 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
14. 이의제기

고객은 **SMR**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의 권리가 있다. **SMR**이 발행한 이의제기 정보를 참조하고 **고객**이 요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.

15. 양도

15.1 **SMR**은 본 계약 하에, **SMR**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

15.2 **고객**은 본 계약 하에, **SMR**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**고객**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달리 전환할 수 없다

16. 계약의 분리

만일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할법원에 의해 불법, 무효 또는 집행불능으로 결정되면, 불법, 무효 또는 집행불능인 부분은 본 계약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본 계약의 남은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.

17. 포기

본 계약 하에 **고객**에게 의무의 준수를 언제든 요구해야 하는 **SMR**이 그렇게 못한 것이 본 계약 하에 다른 때 또는 다른 의무의 실행을 요구해야 하는 **SMR**의 권리포기는 아니다.

18. 관계

본 계약이 **SMR**과 **고객**간에 수탁, 고용, 대리인, 또는 파트너십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.

19. 통지

19.1 본 계약 하에 통지를 주거나 통지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:

- (a)통신을 위해 신청서에 지명된 또는 통지에 의해 변경된 수신자의 주소로 직접 보내져야 한다
- (b)수신자에게 직접 전해지거나, 우편 또는 팩스로 수신자의 주소로 보내져야 한다

19.2 **19.1**항에 따라 주어진 통지는 아래같이 수신되게 해야 한다

- (a)손으로 전달했다면, 전달과 동시에
- (b)우편을 보냈다면, 발송 후 3일안에
- (c)팩스로 보냈다면, 발신자의 팩스가 전체 통지문에 성공적인 전송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만들었을 때

20. 불가항력

본 계약이 전쟁, 자연재해, 전염병, 태엽, 공장폐쇄 및 그 외의 다른 통상의 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원인으로 수행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다른 일방에 의한 클레임 제기 또는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. 만약 본 계약이 **60**일이 넘도록 수행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21. 준거법 및 재판관할 법원

21.1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해석되고 적용된다.

21.2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 서울법원에 비전속적 재판관할을 제기한다.

인증마크 라이선스 약관 및 조건

1. 적용성

- 1.1 본 약관은 **SMR이 고객에게 사용을 허가한 인증마크** 사용에 적용한다
- 1.2 본 약관은 해당하는 모든 규칙과 일치되도록 되어있다. 만약 본 약관 및 해당 규칙간 불일치가 있으면, 그런 불일치에 대해서는 해당 규칙이 우선한다.
- 1.3 본 약관은 주문, 편지나, 기타 문서, 협상이나 어느 쪽이든, **고객이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해 올 수 있는 다른 조건에 우선한다.**
- 1.4 **SMR**을 대신해 구두로 본 약관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고 행동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. 포기 및 변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**SMR**의 대표가 서명한 문서로만 효력을 가진다.
- 1.5 인정기관의 지시를 **SMR**이 충족하는데 필요한 변경을 포함하여, **SMR**은 본 약관 및 조건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고객에게 통지하거나 SMR 웹사이트에 게시한다

2. 해석

- 2.1 반대 의사가 없으면, 본 약관에서 사용된 표현은 인증약관에서 주어진 의미와 같다.
- 2.2 본 약관에서
'인증서' 인증등록을 위해 **SMR**이 발행한 문서를 의미한다.
'인증약관'은 **SMR**의 인증서비스 약관 및 조건을 의미한다.
'고객' 인증을 얻으려는 조직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
'인증마크 사용권' 3.1항에 따라 승인된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.
'허가된 인증마크'는 인증서에서 식별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.
'자료'는 제품, 및 정보와 제품,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자료를 말한다.
'규칙'은 인증마크의 사용에 적용되는 **ISO/IEC 17021, 17030**, 해당 **IAF** 문서 및 인정기관 요구사항을 말한다.
'**SMR**'은 에스엠인증원(주) (사업자등록번호: 107-81-97144)를 의미한다.

3. 인증마크 사용권

- 3.1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권은 고객의 인증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마크로써 인증서에서 확인되는 표준 및 기타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참조로 인증마크를 사용하도록 고객에게 비배타(非排他)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. 통상적으로 인증서 발행/교부를 인증마크 사용권의 부여로 간주한다.
- 3.2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가 다른 사람에게 인증마크의 사용을 허가하는 SMR의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

4. 고객의 의무

일반사항

- 4.1 고객은 인증마크가
(a)사용허가에 따라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
(b)어떤 혼동이나 기만 또는 속이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; 그리고
(c)**SMR**이 발행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

인증마크의 사용

4.3 고객은

- (a)인증마크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을 인정하는 선언을 포함해 **SMR**의 지시와 사용권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기로 **SMR**과 동의한다.
- (b)**SMR**이 요청할 때, 홍보자료 샘플을 제출하는데 **SMR**과 동의한다
- (c) (b)항 하에, **SMR**에 제출된 홍보자료에 대해서 **SMR**의 지시를 준수하는 것을 포함해, (a)항을 준수 하지 않는 것을 즉시 정정하는데 **SMR**과 동의한다
- (d)인증마크 표시를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, 수정 또는 손상하지 않기로 **SMR**과 동의한다
- (e)고객이 인지하게 된 인증마크의 무단 또는 의심스러운 사용에 대해서 **SMR**에게 보고하는데 **SMR**과 동의한다.
- (f)인증마크를 보호하고 본 약관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**SMR**이 요구하는 모든 협력과 접근을 제공하는데 **SMR**과 동의한다
- (g)인증마크에 대해서 사용권 이외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데 **SMR**과 동의한다
- (h)인증마크의 소유권 또는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도전하지 않기로 **SMR**과 동의한다
- (i)**SMR**의 동의 없이 인증마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현혹시키는 유사한 상표, 기업명 또는 같은 이름 또는 로고를 포함하는 회사명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데 **SMR**과 동의한다

5.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

5.1 **SMR**의 허락 없이, **고객**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변경, 수정, 손상 또는 파손하지 아니한다.

5.2 **고객**은 인증마크 사용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 있고 사용권의 증거로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. 사본이 명확하게 사본으로 식별될 수 있다면 **고객**은 제공된 인증서를 복사할 수 있다.

5.3 인증서 원본은 **SMR**의 재산으로 **SMR**이 요구하면 즉시 **SMR**에 반환되어야 한다.

6. 고객의 보증 및 배상

6.1 **고객**은 인증마크가 사용허가에 따라서만 사용되는 것을 **SMR**에 보증하고, 만약 그렇지 않으면 **SMR**이 서면으로 승인한 것에 따른다

6.2 **고객**은 **SMR**이 직·간접적으로, 아래의 결과로 입을 수 있는 모든 손실, 피해 또는 비용(변호사 및 자신의 고객에게 부담하는 비용 및 **SMR**이 야기했는지 **SMR**을 상대로 주어진 것이든지)에서 **SMR**을 보호해야 한다;

(a)**SMR**이 본 사용권을 해지키 위해 명시적 권리를 실행하는 것에 대한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고, **고객**이 본 약관을 위반; 또는

(b)과실행위나 누락 또는 **고객** 또는 **고객**의 임직원 및 대리인의 고의적 위법행위

(c)**고객**이 사용하는 인증마크에 관련한 제품,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하는, 인명의 상해나 사망 또는 재산의 손실이나 피해

7. 보증위반에 대한 추가 배상

만약 **고객**이 6.1항의 보증이나 본 약관의 다른 조항들을 위반하면, **고객**은 **고객**의 비용으로

(a)즉시 **SMR**에 통보하고 **SMR**이 요구하는 정보를 즉시 제공한다.

(b)**SMR**이 추가 위반방지 또는 위반의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(**SMR**이나 대중의 일부에게) 지시를 아래를 포함해 즉시 준수한다;

(i)홍보자료를 수정이나 파괴한다

(ii)정보를(홍보자료를 포함해) 대중에게 제공한다

(iii)현재의 인증 또는 인증서의 보유를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중단한다

(iv)(b)항 하에 발행된 지시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는 문서로 **SMR**에 통보를 지속해야 한다.

8. SMR의 보증

SMR은 **고객**에게 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증한다

9. 인증마크 사용권의 해지

9.1 이 조항에 따라서 인증마크 사용권은 인증서의 만료일에 만료되거나 해지된다

9.2 **고객**은 **SMR**에게 통지로 인증마크 사용권을 해지할 수 있다

9.3 **고객**의 인증이 정지, 취소 또는 만료가 되면, **SMR**은 즉시

(a)**고객**에게 통지한다

(b)위반의 특징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**SMR**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**고객**은 **SMR**에게 제공한다

9.4 **고객**의 인증이

(a)인증약관에 따라서 정지되고, 그 후에 인증마크 사용권도 정지되면 **고객**은 정지기간 동안 인증마크의 사용에 대해 **SMR**이 발행한 서면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

(b)인증약관에 따라 취소 또는 만료되면, 인증마크 사용권도 자동적으로 그리고 즉시 해지된다.

9.5 **SMR**은 **고객**에게 통지로 인증마크 사용권을 해지할 수 있다. 만일:

(a)**고객**이 본 약관을 위반하고 위반사항 제거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제거에 실패한 경우

(b)**고객**이 그 위반을 제거할 수 없는 본 약관에 대한 자료제공을 위반한 경우

10. 이의 제기

고객은 **SMR**의 결정에 대해 해당 규칙에서 주어진 권리를 포함해 이의제기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. 해당규칙 및 **SMR**이 발행한 이의제기 정보를 참고하거나 **고객**이 요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.

11. 인증마크 사용권 해지 후

11.1 인증마크 사용권 해지에 관해, **고객**은

(a) 자료에 대해서나 자료에서 포함해, 아래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

(i) 인증마크 또는

(ii) 인증마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현혹할 수 있는 인증마크를 포함한 상표

(b) 고객이 보관, 소유 또는 관리하는 인증마크가 포함된 모든 자료를 파괴하거나 자료에서 인증마크를 삭제해야만 한다. 그리고;

(c) 즉시 인증서를 SMR에 반환해야 한다

11.2 인증마크 사용권의 해지는 해당 규칙하에 **고객**이 이용할 수 있는 이의제기 권리를 포함해, 어느 한쪽의 발생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
11.3. **11**항은 인증마크 사용권 해지 후에도 유효하다

12. 일반사항

책임의 한계, 양도, 계약의 분리, 포기, 관계, 통지, 불가항력 및 적용법률 및 법원을 다루는 인증약관의 조항은 준용해서 인증마크 사용권에 적용한다.

에스엠인증원
서울 본사

우) 14344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22 효성해링턴타워퍼스트 323호
대표전화 02-867-2777 팩스 02-867-2009 전자우편 info@smr.co.kr

에스엠인증원
해외 사무소

인도, 델리 사무소

343, Om Shubham Tower, Neelam Bata Rd,
N.I.T., Faridabad-121 001, Haryana
Tel: +91 129 4034513, 4054513
Fax:+91 129 4035138, 4035139

터키 사무소

Kayisdagi Cad. Yesil Konak Sit. A Blok
No:178/7, ISTANBUL
Tel: + 90 216 573 6404
Fax: + 90 216 573 6436

인도, 뭄바이 사무소

C-403, Silver Tower, 4th floor, Behind
Cambridge School, Opposite Terapanth
Bhavan, Thakur Complex, Kandivali(East),
MUMBAI - 400 101
Tel: +91 22 2060-0691
Mobile : +91 92242 77283

말레이시아 사무소

Suite 8-163, Wisma Budiman, Persiaran Raja
Chulan, 50200, Kuala Lumpur, Malaysia
Tel: + 603 2718 1062 / 60149194107
Fax:+ 603 2718 0998

베트남 사무소

FOSCO Officetel Service 2, D10-11, 40
Ba Huyen Thanh Quan Street, District 3,
Ho Chi Minh City
Tel: + 930 1967/3890
Fax: + 930 3890

싱가포르 사무소

2 Ang Mo Kio Street 64, #05-01c Econ
Industrial Building Singapore 569084
Tel : +65 64775481
Fax: +65 64775484



www.smr.co.kr